

2010년 교통 기술사업화 지원 추가 공고 안내서(안)

2010. 7

국 토 해 양 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목 차

I. 2010년 교통 기술사업화 지원 추가 공고	
1. 공고과제 및 일반사항	2
2. R&D정책인프라사업 기술사업화 지원 공고내용	4
II. 신청방법 및 관련서류 작성	
1. 신청자격 및 참여제한	10
2. 신청서 접수일정	12
3. 신청서 접수 및 처리	12
4. 기타	16
III. 선정평가	
1. 선정평가 절차 및 기준	18
2. 가점 및 감점기준	19
IV. 연구개발비 계상기준	
1.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22
2. 연구개발비계상 공통기준	23
3. 비목별 계상기준 및 유의사항	23
V.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신청 관련 Q&A	32
VI. 별첨자료	37

I. 2010년 교통 기술사업화 지원 추가 공고

1. 공고과제 및 일반사항

가. 공고과제 및 지원예산

○ R&D 정책 · 인프라사업 기술사업화 지원 과제 공고

과제 유형	공모 형태	기술 분야	지원 과제수	공고과제	총 연구 기간	'10정부 지원예산
일반 과제	자유 공모	교통	8개 내외	- 사업화타당성 검증 (기술가치평가 등)	3개월 내외	과제당 24백만원 내외

- 사업화타당성 검증 → 추가기술개발 2단계로 지원하며 정부지원금은 사업화 타당성 검증시 24백만원, 추가기술개발시 최대 200백만원 내외 지원

- 금회 지원을 통해 「사업화 타당성 검증」 대상 과제 (10개 내외)를 선정하여 기술가치평가 등을 지원하고 그 결과에 따라 그 중 7개 내외 「추가기술개발」 지원

※ 총 사업기간, 사업비 및 선정과제수는 정부예산과 심사결과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나. 일반사항

○ 과제는 필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과 참여기업을 편성하여 신청가능

※ 신청기관 중 위탁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은 임의 편성이 가능하나 과제관련성 여부에 따라 향후 협약에서 제척될 수 있음.

※ 개정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08.12 부분개정)』을 반영하여 용어 등 재정의함

- ‘공동연구기관’이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주관연구기관과 분담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기관을 말함
- ‘위탁연구기관’이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함 (공동연구기관은 위탁연구기관을 둘 수 없음)
- 국제공동연구 또는 전문가 활용 적극 검토
 - 필요시 관련 해외 선도 기관과의 공동연구 추진방안 및 전문가 활용계획을 검토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제시
- 연구책임자(기관)는 성과목표(지표)별 달성목표치 및 가중치 등을 연구개발계획서에 제안하여야 하며, 이를 과제선정 후 해당연구책임자(기관)에 대한 진도점검·관리 및 성과평가 등의 근거자료로 활용 추진
 - ※ 목표대비실적 평가자료 등으로 활용
- 총 지원예산 및 연차별 지원예산은 향후 선정평가 결과 또는 정부 예산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다. 유의사항

- 실용화 및 사업화를 목표로 추진하는 과제로 정부의 연구개발비 출연기준 준수(총연구비 중 정부지원금 60% 이내 등)
- 연구책임자(기관)는 성과목표(지표)별 달성목표치 및 가중치 등을 신청용 연구개발계획서에 제안하여야 하며, 이를 과제선정 후 해당 연구책임자(기관)에 대한 진도점검·관리 및 성과평가 등의 근거 자료로 활용 예정
- 가·감점 관련하여 아래 사업 공고 내용 중 가·감점 관련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해당할 경우 관련 증빙자료 제출 필수
- 기타 관련 상세사항은 아래 사업 공고내용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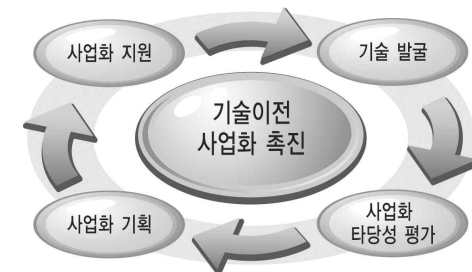
2. R&D정책인프라사업 기술사업화 지원 공고내용

가. 배경 및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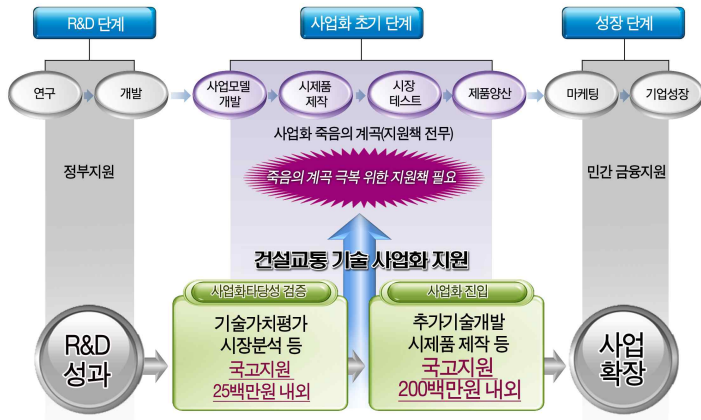
- 지속적인 연구개발투자에도 불구하고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가 추진되지 않는 기술 휴면화(休眠化) 현상 대두
- 기술개발에 한정되어 있는 R&D사업 범위 확대를 통해 R&D성과를 사업화와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 필요
- 특히, 건설교통 연구개발성과의 확산을 위해서는 건설교통분야에 특화된 기술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필요
 - 각 부처별로 기술이전 및 사업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건설교통기술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지원율이 저조한 편

나. 개요

- 국가R&D 및 민간에서 개발된 기술 중 사업화 가능성이 큰 기술을 발굴하여, 사업화 타당성 검증, 단기간의 추가 기술개발 등을 지원
- 연구성과 활용을 통한 이익창출 → 기술개발에 재투자 → 우수 연구성과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형성



- 사업화 타당성 검증 → 추가기술개발지원으로 진행하여 정부지원 필요 기술에 선택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국고 낭비 최소화 및 기술 사업화 성공 유도



라. 지원 기술분야 및 지원예산

□ 지원 기술분야

- 금번 공고 대상 기술분야는 교통 관련 기술로 한정

□ 과제별 지원예산

과제 유형	공모 형태	기술 분야	지원 과제수	공고과제	총 연구 기간	'10정부 지원예산
일반 과제	자유 공모	교통	8개 내외	- 사업화타당성 검증 (기술가치평가 등)	3개월 내외	과제당 24백만원 내외

마. 과제별 세부 내용

□ 사업화 타당성 검증(기술가치평가 등) 지원

○ 지원 개요

-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사업 또는 민간 연구개발을 통해 기존에 개발된 기술 중 사업화 가능성이 큰 기술을 선정하여 사업화 타당성 검증(기술가치평가 및 사업화 계획) 지원

○ 지원 분야 및 신청 자격

- 금번 지원분야는 교통 기술로 한정
- 신청자격은 신청과제의 핵심기술을 보유하거나 이전 받은 기업으로 상세 내역은 “Ⅱ-1-가”항 참조

○ 선정방법

- “기술가치평가 및 사업화 계획 연구개발계획서”에 대한 서류검토와 발표평가를 통해 지원 대상 선정

○ 세부지원 내용

- 핵심기술 보유기관 또는 핵심기술에 대한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한 기관을 대상으로 사업화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는 기술가치평가 비용을 지원하고, 선정기관은 그 결과를 토대로 해당 기술의 사업화 계획 및 추가기술개발 계획 수립
- 협약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개월 내외
- 지원금액은 과제당 24백만원 내외이며 총 연구비 중 정부지원금 비율은 60%이하 범위에서 지원 “Ⅳ-1” 내용 참조
- 가·감점 부여와 관련한 사항은 “Ⅲ-2” 내용 참조하되 관련 증빙 서류 필히 제출(가점 근서서류 미제출시 가점 불인정, 감점 근거 서류 미제출시는 반려)

- 주관연구기관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기술가치평가 전문기관 중 주관연구기관의 판단에 따라 택일하여 사업화 대상기술의 기술가치평가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평가 시 제출

※ 기술가치평가 전문기관

한국화학시험연구원, 국방기술품질원,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산업 기술진흥원, 한국산업은행,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발명진흥회, 기술보증기금, 보건산업진흥원, 전자부품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이상 11개 기관)

- 기술가치평가 비용은 간접비의 지적재산권 출원·등록비에서 계상
- 기술가치평가 및 사업화 계획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한 기술에 대해 “추가기술개발 및 검증 지원” 예정이므로 본 연구개발계획 서상의 “1. 사업화 대상기술 개요” 중 “소요자금 및 조달계획”에 소요비용을 구체적으로 기입

※ “추가기술개발·검증” 지원시 정부출연금은 과제당 200백만원 내외임.

□ 추가기술개발 및 검증

○ 지원 개요

-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에서 지원하는 '10년도 “사업화 타당성 검증(기술가치평가 등) 지원” 연구를 수행한 기관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 그 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술에 대해 지원(평가대상 외 기관 지원 불가)

○ 선정방법

- 기술가치평가결과, 현장조사결과, 사업화 계획 결과 등을 바탕으로 우선순위 도출평가를 통해 지원 대상 선정
- 세부 내용은 '10년도 “사업화 타당성검증(기술가치평가 등) 지원” 선정 기관에 별도 통보 예정

○ 세부지원 내용

- 협약기간은 협약일로부터 1~1.5년 이내
- 지원금액은 과제당 200백만원 내외이며 총 연구비 중 정부지원금 60%이하 범위에서 지원
- 단, '10년에는 과제당 80백만원 내외를 지원하고 중간점검 등을 거쳐 잔여연구비는 '11년에 지원
- 추가기술개발·검증 단계에서 부담한 매칭펀드 중 현금에 대해 발급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R&D사업 참여실적증명서 발급 가능
- 추가기술개발·검증 후 종료평가 결과 “성공” 판정시 기술료를 반드시 납부하여야 함
- 정부출연금 및 기술료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에 대한 「지급이행보증 체결」 의무화

※ 「기술사업화 지원」과 관련하여 동 안내서에서 정하지 않은 제반 사항은 국토해양부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의 해석에 따름

Ⅱ. 신청방법 및 관련서류 작성

1. 신청자격 및 참여제한

가. 신청자격

- 국토해양부소관연구개발사업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 제4조에 의한 기관 중 아래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법인사업자
 - 사업공고일 현재 법인설립이 완료된 기업(사업자 등록증 기준)
 -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및제2호에 의한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
 - 「추가기술개발 및 검증」 단계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핵심기술을 보유하거나 이전받은 법인
 - 투자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없는 기업

나. 연구인력사전등록

※ 연구인력 사전등록제 : 공고된 과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연구자들이 신청 접수 전 전문분야, 주요경력 및 관심분야 등을 평가원 홈페이지에 등록하고 이를 공개함으로써 우수 연구진의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

-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모든 연구책임자들은 사전등록기간 동안 평가원연구관리시스템의 연구인력사전등록을 통하여 해당경력 및 관심분야를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된 인원내 한하여 연구책임자(주관, 공동)로 참여 가능

※ 단, 기한 만료 후 해당과제에 사전등록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기한 연장가능

※ 연구인력 사전등록제 : 공고된 과제에 참여하고자하는 연구자들이 신청 접수전 전문분야, 주요경력 및 관심분야 등을 전문기관 홈페이지에 등록하고 이를 공개함으로써 우수 연구 개발자들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

다. 연구책임자 및 기관의 참여제한

-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의 사업단장, 연구단장, 핵심주관연구책임자, 2개 이상의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주관, 공동 연구책임자)
※ 다만, 수행중인 과제가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종료될 경우는 과제 수에서 제외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마감 전일까지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자 또는 기관
- 연구개발계획서 등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각종 증빙자료를 조작한 경우에도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며, 선정된 후 이러한 사실이 발견 되면 선정취소, 정부출연금 환수 등의 제재조치
- 연구개발의 집중과 연구자원의 결집을 위해 동일과제 내에서 단일 기관은 주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또는 위탁연구기관 중 1개에 한하여 참여토록 함

라. 참여연구진 구성 시 유의사항

- 연구신청자는 참여기관 수 과다편성으로 인한 추진체계의 비효율성을 최대한 지양하고, 반드시 필요한 기관으로만 구성하여 연구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할 것
-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선정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동일기관이 서로 경쟁관계에 있는 컨소시엄에 주관, 공동연구기관으로 동시참여 불가
※ 경쟁기관에 소속된 연구자를 전문가로서 활용하는 것은 가능

마. 보안등급의 분류(추가)

-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 보안관리 규칙(교육과학기술부령) 및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국토해양부 훈령)에 따라 연구기관 보안관리심의회 심의를 거쳐 보안등급을 분류하고, 연구개발계획서의 해당란에 보안등급을 표기하여 신청서 제출

2. 신청서 접수일정

가. 과제 접수일정

공고기간	연구인력사전등록	인터넷 입력	신청서 접수	사업설명회
'10.7.16(금) ~8.16(월)	'10.8.9(월) ~8.16(월)	'10.8.9(월) ~8.16(월)	'10.8.16(월)	'10.7.27(화) 오후 3시

※ 인터넷 입력과 서류접수 마감시한은 당일 16:00 까지임

나. 사전등록 요령

-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연구관리시스템(<http://ctpass.kictep.re.kr>)에 접속하여 공고메뉴 사전등록항목에서 신청하고자하는 과제를 선택하여 인력정보를 입력

다. 사업설명회

- 일시 : 2010년 7월 27일(화) 오후 3시
- 장소 : 우리원 건물 5층 신창건설 대강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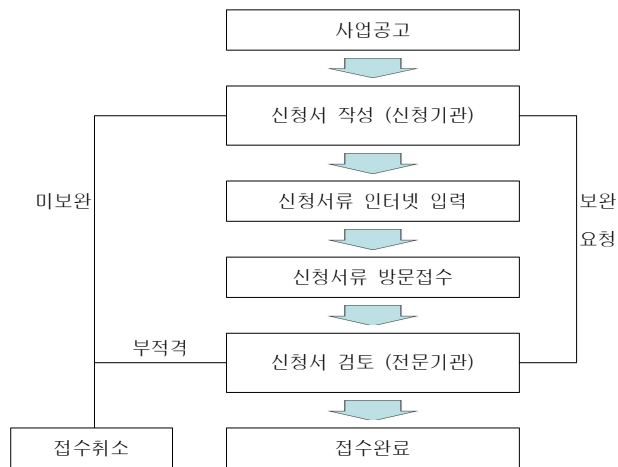
3. 신청서 접수 및 처리

가. 신청서류

- 신청 공문(신청 기관장 직인 날인) 1부
- 연구개발계획서(A4용지, 좌철제본) 2부
※ 연구개발비예 요약서, 참여의사 확인서, 수행확약서 등 포함
- 중소기업 확인서 1부(해당되는 경우)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행하는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확인서 1부(해당되는 경우)
※ 실제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존재하나 상기 인증서 또는 확인서가 없는 경우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업부설연구소 인증 신청시 제출하는 모든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

- Letter of Intent 등 1부(해당되는 경우)
※ 자유형식으로 작성하되,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해외연구자와 해당 소속기관장의 서명 포함
- 연구개발계획서(HWP 파일) CD 1매
- 사업화대상 핵심기술 보유자의 기술이전 동의서 또는 참여 협약서 원본 1부
- 신청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신용평가조회결과서(주관연구기관) 원본 1부
- 서류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된 신청법인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1부
- 사업화대상 핵심기술 보유자의 기술보유 관련 증빙자료 사본 각 1부
- 사업화대상 핵심기술이 가점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충분한 해당 증빙자료(기술료납부확인서 포함) 각 1부
- 타부처 유사과제 미신청 협약서 1부
- 사용인감계(해당시) 1부
- 인감증명서(해당시) 1부

나. 신청서 접수 및 처리절차



다. 신청서 접수

- 신청서는 서류접수를 원칙으로 하되, 서류접수 전에 인터넷을 통해 연구개발계획서를 입력(Upload)
- 인터넷 입력 방법
 - 연구개발계획서 입력시 주관연구책임자가 전문기관 홈페이지의 연구관리시스템(<http://ctpass.kictep.re.kr>)에 접속, 안내에 따라 입력
- 서류접수
 - 연구개발계획서를 인터넷에 입력(Upload)한 후 신청기관의 장은 지정된 접수기간 내에 신청서류를 평가원에 방문하여 제출

라. 신청서 작성요령

-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각 연구기관은 작성요령에 준하여 연구개발계획서 및 첨부서류 작성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시 과제제안요구서(RFP)에 부합될 수 있도록 작성
- 기 수행하였거나 현재 수행중인 유사과제와 연구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작성(www.kictep.re.kr 열린정보, www.ntis.go.kr 참조)
※ 연구개발 수행 도중 과제의 중복성이 사후에 발견되거나 연구개발목표가 다른 연구개발에서 성취되어 연구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때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동 과제와 관련되는 기 수행 및 수행 중 연구개발결과와의 중복성 검토 결과 및 연계·활용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연구수행과정에서 실험이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내용, 실험목적 및 결과활용방안 등을 “분산공유 6대 실험시설”과 연계해서 작성
※ 공고시 첨부한 “분산공유형 건설연구 인프라 실험시설 소개자료” 참조

Ⅲ. 선 정 평 가

1. 선정평가 절차 및 기준

가. 평가절차

신청서류 접수 및 사전검토·보완조치	• 신청기관 : 연구개발계획서 등 신청서 접수 • 전문기관 : 공모분야와의 부합성 및 신청서류 등 적합성 검토
평가위원회 평가 (발표평가)	• 연구개발계획 평가
운영위원회 심의 (필요시)	• 평가결과에 대한 운영위원회 심의·확정 • 신청기관에 평가결과 통보

나. 평가항목

□ R&D 정책·인프라사업 기술사업화 지원

- 사업화 타당성검증(기술가치평가 등)

기준항목	세 부 항 목
기술성(40점)	기술의 우수성(10점)
	기술의 독창성(10점)
	기술의 파급효과(10점)
	기술의 활용방안(10점)
시장성(40점)	국내외 시장규모(10점)
	기술 수요 및 현장적용 가능성(10점)
	경쟁기술 대비 가격경쟁력(10점)
	수입기술 대체가능성(10점)
사업주체의 역량(20점)	연구개발 인력(5점)
	연구개발 실적 및 지적재산권(5점)
	기술개발 계획(5점)
	사업화 계획(5점)

※ 총점은 100점이며, 60점 미만인 경우에는 탈락

2. 가점 및 감점 기준

가. 일반사항

가감점 구분	내 용
연구수행 형태에 따른 가점	○ 대기업이 주관연구기관으로서 - 중소기업이 참여하지 않는 경우 : 1점 -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 2점 ○ 기업 이외의 기관이 주관연구기관이고,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 1점 ○ 중소기업이 주관연구기관인 경우 : 2점
총 연구비에 대한 연구신청기관의 연구비 부담비율에 따른 가점	○ 총 연구비에 대한 연구신청기관이 부담하는 연구비(현금)의 비율에 따라 신청기관 별로 가점 부여 (단, 경쟁응모인 경우에 한함) - 신청기관 중 연구비(현금) 부담비율이 가장 높은 기관 : 1.0점 - 그 외 기관은 최대 연구비(현금) 부담비율을 기준으로 연구비(현금) 부담비율에 따른 가점 부여 · 부여가점 = $1.0 \times \frac{\text{해당 기관 연구개발비 현금 부담비율}}{\text{신청기관 중 최대 연구개발비 현금 부담비율}}$
연구개발과제의 최종평가결과 등에 따른 가·감점	○ 연구개발과제의 최종평가 결과, 최우수등급(상대평가시 최상위 10%, 절대평가시 만점의 90% 이상)인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후 2년간 2점 가점 ○ 연구개발과제의 최종평가결과 최하위등급(상대평가시 최하위 10%, 절대평가시 만점의 60% 미만)인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최종 평가 후(연구개발참여제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참여제한 기간 만료 후) 2년간 2점 감점 ○ 연구개발과제의 최종평가결과 하위등급(상대평가시 차하위 20%, 절대평가시 만점의 70% 미만)인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후 2년간 선정 평가점수의 1점 감점
추적평가결과에 따른 가감점	○ 종전에 수행한 연구개발과제의 추적평가결과에 따라 다음의 기준을 적용하여 가감점 부여 - 추적평가 결과 만점의 90% 이상인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가 신규과제 주관연구책임자로 참여시 : 추적평가 후 3년간 가점 2점 - 추적평가 결과 만점의 80% 이상 90% 미만인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가 신규과제 주관연구책임자로 참여시 : 추적평가 후 3년간 가점 1점
기 타	○ 여성연구자가 신규과제 주관연구책임자로 참여시 가점 1점 ○ 최근 3년 이내에 우수 논문(임팩트팩터 15이상)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가 신규과제를 신청할 경우 가점 1점 ○ 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협약포기경력이 있는 주관 또는 협동연구책임자나 기업의 경우, 향후 3년간 3점 감점 ○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수행 도중 연구를 포기한 경력이 있는 주관 또는 협동연구책임자나 기업의 경우, 향후 5년간 3점 감점

나. 별도사항(본 공고 해당사항)

- 건설교통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여 사업화 추진시 가점 2점 부여
- 종료 과제 중 사업화 실적이 우수한 기업이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신규과제 신청시 가점을 부여하여 사업화 촉진
 - 과제 접수 완료일까지 종료과제에 연구기관으로 참여하여(위탁 제외) 해당 기술료를 완납한 경우 가점 1점 부여
- 국토해양부 고시 「녹색인증제 운영요령(제2010-199호)」 [별표 4]의 녹색기술 인증을 위한 기술수준을 만족하는 경우 가점 1점 부여
- 재단법인 건설연구인프라운영원 보유 실험 시설을 이용하여 연구를 수행시 가점 1점 부여
 - 이 경우 연구개발계획서 내 실험계획에 상기 실험시설 이용계획을 기입하여야 하며 향후 수행 여부 검증 예정
- 개발기술의 수요처가 확실한 경우 가점 1점 부여
 - 이 경우 해당 수요처의 구매계획서 및 구매협약서 제출 필수

※ 상기 모든 가점 기준 관련하여 가점 기준에 해당할 경우 관련 상세 증빙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자료를 접수기한까지 미제출하거나 제출 자료 검토 결과, 전문기관 또는 평가위원회에서 가점해당 여부 판별이 불가능 할 경우 가점 불인정

IV. 연구개발비 계상 기준

1.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 기업이 참여하는 경우의 연구개발비 출연기준

1. 중앙행정기관의 연구 개발비 출연기준	2.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기준	3.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물부담이 허용되는 비목 및 범위
가. 참여기업이 대기업인 경 우 : 총 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나.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 총 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다. 참여기업이 2개 이상 이 고, 이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 : 총 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라. 그 외의 경우 : 총 연구 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가. 참여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 부담금액 중 15 퍼센트 이상 나.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 부담금액의 10퍼 센트 이상 (다만, 참여 기업이 연구결과물의 수요업체인 경우에는 전액을 현물로 부담할 수 있다)	가. 참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대기업의 경우에 는 현물투자액의 50퍼센 트 이내) 나. 직접경비 중 보유하고 있 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 비, 재료비, 시제품제작에 소요되는 부품비(대기업 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 기자재 및 시설비는 기 업의 현물부담액중 인 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퍼센트 이내)

〈비고〉

이 표에서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을 말하며, 대기업은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 R&D 정책·인프라사업 기술사업화 지원의 경우 총연구비 중 정부지원비율이 60% 이하(대기업의 경우 50% 이하)를 준수하여야 하며 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기준은 상기 기준 준수

2. 연구개발비 계상기준 공통사항

- 과제당 연구개발비 지원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해당 기관의 자체 규정에 따라 연구수행에 필요한 실 소요액으로 계상
- 환율은 정부의 매년도 예산안편성지침 및 기준에 따름

3. 비목별 계상기준 및 유의사항

가. 인건비

(1) 내부인건비

-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이 해당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지급되는 인건비
 -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실지급액을 해당 과제참여율(100퍼센트를 초과하지 못한다)에 따라 계상
 - 인건비 중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계상은 하되 지급하지 아니하나,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상하여 지급 가능
 - 연구개발서비스 분야
 -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① 운영규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 ② 운영규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③ 운영규정 제4조제1항제11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비영리 연구기관

(2) 외부인건비

- 연구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아니하나 해당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 연구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실지급액을 해당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연구비 관리 우수기관으로 인증된 대학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학생연구원 인건비를 연구개발 과제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할 수 있음.
 - 대학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해당 과제별 투입되는 인원 총량 기준으로 계상
- ※ 인건비 중 학사·석사·박사과정 학생의 외부인건비는 참여율 100퍼센트를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한 금액으로 하고, 학생의 참여율은 정규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상하여야 한다.
 - 학사과정 : 월 1,000,000원
 - 석사과정 : 월 1,800,000원
 - 박사과정 : 월 2,500,000원

※ 연구수당, 간접비 등 연동비목의 계산시, 미지급 인건비는 과제당 참여율 30% 이내에서 계상가능

- 연동비목 계상:
 - 연구수당 : 인건비[지급(현금+현물)+미지급]
 - 간접비, 위탁연구개발비 : 인건비[지급(현금+현물)]

나. 직접비

(1) 연구 장비·재료비

- 기기·장비 및 연구시설비
 - 해당 연구개발사업에 1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와

부수기자재(해당 연구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용 컴퓨터는 제외),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에 관한 경비 및 관련 부대경비를 실소요 경비로 계상

- 연구수행기관의 내부 기자재, 시설의 임차 비용 계상 불가
- 과제와 무관한 사무기기, 가전제품 등 범용화 된 기자재는 계상 불가(프린터, 복사기, 스캐너, 개인용 컴퓨터 등)
- 취득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장비 또는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 활용이 가능한 장비는 전문기관 연구관리종합정보시스템 또는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의 연구장비정보망에 등록된 장비의 재활용여부를 확인한 후 계상

○ 시약 및 재료비 및 시험분석료, 전산처리, 관리비 등은 실소요 경비로 계상

- 연구수행기관 전체의 전산처리 및 관리비 계상 불가
- 시험분석료는 시험분석기관의 기준단가를 적용하여 계상

○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경비

- 실소요 경비로 계상하되 연구수행기관에서 자체 제작할 경우 제작에 필요한 비용을 인건비, 재료비로 계상하여야 함
- 제작하고자 하는 시제품·시작품·시험시설 대한 내역 및 연구개발비 산정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다만, 참여기업이 현물로 부담하기로 한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의 경우 기업예산회계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감가상각액을 기준으로 당해 과제 사용물을 감안한 비용으로 계상 가능

(2) 연구활동비

○ 연구원의 국내·외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 당해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의 국내·외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는 당해 연구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 소요액으로 계상하되 다음에 해당되는 비용은 계상 불가

- 내부차량비, 차량임차비, 유류비 등 연구용도 외의 비용
- 세미나·학회, 워크숍 참석시 개최기관에서 숙박·식사를 제공할 경우 숙박·식사비용 계상 불가
- 국외 여비의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현금부분(정부출연금+기업부담금 중 현금)의 3~7% 이내 계상

연구개발비	계상기준	비 고
3억원 미만	7% 이내	최대 15백만원 초과 계상불가
3억원 이상~10억원 미만	5% 이내	최대 30백만원 초과 계상불가
10억원 이상	3% 이내	최대 100백만원 초과 계상불가

※ 연구단 및 일반과제의 경우 과제별, 사업단의 경우 핵심과제별 적용

- 당해 연구기간내 동일국가에 동일 목적으로 중복출장 불가
- 같은 목적으로 3인 이상 해외출장 불가

○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위탁정산비용

- 최종 및 연차과제별 보고서 인쇄, 배포 비용 반영
- 연구과제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전기료, 상·하수도료, 사무 및 난방용 연료비, 경상 피복비, 휴대폰 사용료 등 계상불가
-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 구입·유지비용은 대학연구실에서 계상 및 집행이 가능함

- 냉난방기기(선풍기, 온풍기, 에어컨 등), 공기정화기, 차광기(블라인드), 가습기, 스탠드, 정수기 등 건강하고 청결한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에 한함.

- 위탁정산비용은 연구개발비의 현금부문(정부출연금+기업부담금 중 현금)의 규모별 계상

(기준:세부과제별, 단위:천원, 2009. 7. 1)

연구개발사업비	수수료
0.5억원 미만	449
0.5억원 이상 1억원 미만	524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599
2억원 이상 3억원 미만	700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850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000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1,199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1,404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1,684
100억원 이상	1,852

주1) 일반과제의 경우 과제별 계상; 연구단, 사업단의 경우 세부과제별 계상

주2) 상기 수수료는 추후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연구비관리인증을 받은 기관이 주관연구기관으로 연구과제를 수행할 경우 인증기관의 연구 개발비를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위탁정산수수료를 계상

연구비관리인증제 적용범위	위탁정산수수료 계상
-인증기관이 주관연구기관이 되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 (타기관에 발주한 위탁연구과제 포함)	-주관연구기관은 인증기관인 주관연구기관의 연구비를 제외한 후 비인증기관인 협동연구과제의 연구비에 대한 위탁정산수수료를 산정하여 계상하여야 함.
-인증기관이 비인증기관으로부터 수탁하는 협동연구과제는 인증제 인센티브 부여. 단, 위탁연구과제는 적용 배제	-비인증기관인 주관연구기관은 인증기관의 협동연구과제 연구비를 제외한 후 위탁정산수수료를 산정하여 계상하여야 함

- 전문가활용, 국내·외 교육훈련, 기술정보수집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비,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특허정보조사비, 해당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

- 회의·세미나 개최비 : 회의장 임차료, 음료, 다과비 등의 실 소요비용을 계상하며, 연구책임자는 회의일시, 장소, 참석인원, 목적, 회의내용, 참석자의 서명 날인 등이 명시된 회의록을 비치하여야 함
- ※ 기관내부연구자들의 업무협의 등의 회의는 회의비로 집행 불가능함
- 과제와 무관하게 학회·세미나의 가입비 및 종신회회비·연회비는 계상 불가
-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문가 활용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는 계상 불가
- 전문가활용비의 경우 전문가 현황정보(전문가, 활용기간, 활용내용, 소요경비 등)를 상세히 기재
- 기술도입비는 기술명, 도입국, 금액, 관련세부연구내용 등을 상세히 기재
- 식대는 참여연구원의 야근 및 특근 식대를 위한 항목으로 회식 및 유홍성 경비로 계상 불가
- 세부과제 조정·관리비
 - 세부(단위)과제가 있는 경우 해당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실소요 경비로 계상
 - 당해 과제 연구결과에 대한 자체 평가비
 - 세부과제와의 세미나, 회의 등의 공통 경비로 사용시, 연구책임자는 회의일시, 장소, 참석인원, 목적, 회의내용, 참석자의 서명 날인 등이 명시된 회의록을 비치하여야 함
 - 연구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 이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소요 경비를 계상

(3) 연구수당

- 해당 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 인건비의 20% 범위에서 계상하여야 하며 초과집행 불가
- 현금, 상품권, 선물비 집행 불가

다. 위탁연구개발비

- 위탁연구개발비는 당해 연구과제의 일부를 외부기관에게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되 원칙적으로 인건비와 직접비를 합한 금액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라. 간접비

- 인건비와 직접비를 합산한 금액에 고시된 간접비율을 곱하여 계상
- 간접비율이 고시되지 아니한 기관은 인건비와 직접비를 합산한 금액의 17%범위에서 계상
- 영리기관에 대하여는 간접비 중 연구실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 및 성과활용지원비만 계상
- 기술창업·사업화 지원 과제의 사업화 타당성 검증(기술가치평가 및 사업화 계획)지원 과제의 경우 기술가치평가비용에 의해 간접비가 인건비와 직접비 합계의 17%를 초과하는 경우는 인정
- 인력지원비
- 지원인력 인건비: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지원인력의 인건비

- 행정지원 전담요원 인건비: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의 인건비(한 개 또는 다수의 연구실을 묶어 총 연구개발비가 10억원 이상이고, 정산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클 경우에만 해당함)
-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 연구지원비

- 기관 공통지원경비: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기관 공통지원경비
-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 경비
- 연구실 안전관리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는 경비(인건비의 2퍼센트 범위에서 집행)
- 연구보안관리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등 연구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경비
- 연구개발준비금 :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중단(제20조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로 인한 일시적 연구중단의 경우는 제외한다), 연구 연가, 박사 후 연수 또는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연수 또는 교육훈련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경비
-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 연구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 학술

정보용 도서 및 해외전자정보(Web-DB)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논문 게재료 등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해당함)

○ 성과활용지원비

- 과학문화활동비 : 연구과제의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 문화확산에 관련된 경비
-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 프로그램(「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상 대분류사업을 말한다) 수행 과제와 직접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에 필요한 모든 비용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비용(특허유지비는 해당 지식재산권의 기술이전 가능성이 높을 경우에 한하여 최초 특허 등록기간 종료 후 2년간 집행 가능)

V.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신청 관련 Q&A

< 목 차 >

Q1) 기업부설연구소가 없는 기업도 주관, 공동, 위탁연구기관으로서 연구 수행을 할 수 있는가?.....	32
Q2)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참여기업 명칭 및 역할 구분은?.....	32
Q3) 참여의사확인서의 작성 및 제출 대상은?.....	33
Q4) 정부지원금에 대한 산업체의 상환의무가 있는가?.....	33
Q5) 과제선정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지?.....	33
Q6)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기관의 경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가 가능한가?.....	34
Q7) 개인기업도 연구개발사업에 참여가 가능한가?	34
Q8) 신용평가조회결과서는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34
Q9) 위탁정산 비용은 어느 비목에 계상해야 됩니까?.....	34
Q10) 연구인력사전등록의 대상과 범위는 어디까지 입니까?.....	35
Q11) 사용인감계와 인감증명서는 왜 제출해야 하나요?.....	35

Q1) 기업부설연구소가 없는 기업도 주관, 공동, 위탁연구기관으로서 연구수행을 할 수 있는가?

A1) 기업부설연구소가 없는 경우에는 기업 내부 규정에 의한 직제 상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있어야 합니다.

※ 연구개발전담부서 요건(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8조제1항)

- ①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임을 알 수 있는 명칭으로 되어 있을 것
- ②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업무가 주요업무로 되어 있을 것
- ③ 자연계 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졌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계의 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을 가진 자 1인 이상이 연구전담요원으로 늘 확보되어 있을 것
- ④ 신청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등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인증서를 제출하거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기업부설연구소 요건(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5조제1항)

- “기업부설연구소”라 함은 연구전담요원을 늘 확보하고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기업부설연구기관으로 신청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등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Q2)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참여기업 명칭 및 역할 구분

A2) 공동연구기관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연구기관과 분담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기관입니다.

위탁연구기관은 주관연구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 또는

세부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위탁연구개발비는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되 위탁 시행기관의 연구개발비 중 인건비와 직접비 합계의 4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참여기업은 주관·공동·위탁연구기관과 달리 연구를 수행하지 않고 기업부담금(현금 및 현물)만을 부담하는 기관입니다. 다만, 참여기업(기업부설연구소)이 연구를 수행하면서 기업부담금을 납부할 경우 주관(또는 공동)연구기관의 자격과 참여기업으로서의 자격을 동시에 갖게 됩니다.

Q3) 참여의사확인서의 작성 및 제출 대상은?

A3) 참여의사확인서는 주관연구기관 이외의 당해과제 참여기관이 모두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관(또는 공동)연구기관이 참여기업으로서의 자격을 동시에 가질 경우에는 참여기업으로서의 참여의사확인서는 별도로 작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Q4) 정부지원금에 대한 산업체의 상환의무가 있는가?

A4) 본 연구개발 과제에 대해 최종평가지 “성공”판정을 받은 경우 기술실시계약을 반드시 체결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소관연구개발사업운영규정」에 의거하여 기술료의 일부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추가기술개발 협약시 해당 과제에 대한 기술료 납부 계획을 협약서에 반드시 명기하여야 합니다.

Q5) 과제선정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지?

A5)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연구책임자 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Q6)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기관의 경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가 가능
한가?

A6) 연구수행기관으로서의 신청자격을 충족시키는 기관에 대해서는
참여가능합니다.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운영규정」 제4조
참여기관의 자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Q7) 개인기업도 연구개발사업에 참여가 가능한가?

A7) 본 공고는 법인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또한 주관, 공동, 위탁연구
기관으로 참여하고자 할 경우 운영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
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갖추어야 합니다.

Q8) 신용평가조회결과서는 어디서 발급 받을 수 있나요?

A8) 금융기관 또는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Q9) 위탁정산 비용은 어느 비목에 계상해야 됩니까?

A9) 위탁정산 비용은 직접비 내 연구활동비에 계상을 해야 하며, 해당
과제금액별로 당해 위탁정산 비용을 연구개발비에 반영하여야 합
니다.

Q10) 연구인력사전등록의 대상과 범위는 어디까지 입니까?

A10) 연구인력사전등록은 해당과제의 주관, 협동, 공동 연구책임자로
참여하고자하는 연구인력에 해당이 되며, 해당 연구과제에 사전
등록 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동 연구책임자는

변경사항 발생시 인터넷 사전입력 마감 이전에 평가원에 사전
통보하여야 합니다.

단, 공고시 연구인력사전등록 대상에서 제외된 과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Q11) 사용인감계와 인감증명서는 왜 제출해야 하나요?

A11) 인감증명서는 확약서 등에 날인한 직인이 동일한 것인지 확인하
는 서류이며 사용인감계 또한 인감도장 대신에 다른 도장을 활
용할 경우 그 효력을 동일하게 증명하는 서류이기에 꼭 제출하
셔야 합니다.

VI. 별첨자료

기술사업화 지원 신규과제에 대한 추진 절차

□ 목적

건설분야 R&D사업 및 민간에서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과제 발굴, 기술가치평가, 추가기술개발 등 사업비 지원

□ 사업 추진 절차 : 사업공고시 별도의 RFP 없음

[신청인]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기술가치평가 전문기관]

